



미국 재무부



미국 국무부



미국 해안경비대

해운업, 에너지 부문, 금속 부문 등
미국 제재조치 이행 관련 권고사항 안내

발행일: 2020년 5월 14일

제목: 불법 선적 및 제재 회피 활동 대응 지침

미 국무부, 미 재무부 산하 외국자산통제국(OFAC), 미국 해안경비대는 해운업, 에너지 부문, 금속 부문 등 관련 업계에 현재 급증하고 있는 불법 선적 및 제재 회피에 대한 동향을 대응하기 위한 정보 및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동 지침을 발행한다. 동 지침은 이란 및 북한, 시리아의 제재 회피 및 밀수, 범죄활동, 테러활동 지원,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을 막기 위해 미국정부가 민간기업과 협력하겠다는 미국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부속서 A와 B, 동 지침은 2018년 2월 23일, 2019년 3월 21일에 발행된 북한의 불법 선적활동에 대한 OFAC 지침 갱신판, 2019년 9월 4일에 발행된 이란의 불법 선적활동에 대한 OFAC 지침, 2018년 11월 20일, 2019년 3월 25일에 발행된 시리아의 불법 선적활동에 대한 OFAC지침을 이은 갱신·확대판이다. 추후 외국자산통제국은 기존 지침에 등재되었던 선박 목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추가 갱신판을 발행할 수 있다.

동 지침은 이란, 북한, 시리아에서 이용해온 공통의 기만적 선적활동 및 제재 위험성을 기술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주의의무 및 제재 준수 정책, 절차 등 접근할 수 있는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 동 지침은 선주, 선박대리점(manager), 운항사(operator), 중개업자, 선용품 공급자, 기국(선박등록국), 항만 하역사, 선주, 화물 운송업자, 선급, 무역업자, 보험회사,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1 2}. 동 지침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용된 기만적인 수법뿐만 아니라 상기에 나열된 특정 해운업계에서 위험성평가 기반 제재 준수프로그램으로

¹ 동 지침은 주로 제재 위험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지만 미국 금융기관의 경우 31 CFR 5장 의심활동 신고 요구사항에 의거 (1) 특정 거래가 합법적이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거래하던 고객과의 거래가 아니라고 의심되는 경우, (2) 특정 거래의 배경과 목적 등 관련 사실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 의심활동보고(Suspicious Activity Report)에 신고해야 한다. 31 CFR 1020.320, 1021.320, 1022.320, 1023.320, 1024.320, 1025.320, 1026.320, 1029.320, 1030.320를 참고하세요.

² 동 지침은 미국법 또는 기타 관련 법령이 아니며 미국법 또는 기타 관련법령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된다.

채택할 수 있는 정책과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민간기업은 제재 위험성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자체 준수프로그램의 보완상황이 발견된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제재 준수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제재 가능성이 있는 해운 활동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고위험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또는 부근에서 항해할 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원유, 정제유, 석유화학제품, 강철, 알루미늄, 구리, 모래, 석탄 등 에너지, 금속 부문의 공급망 체계에 관여하는 모든 개인 및 단체는 동 지침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만적 선적 활동

전 세계 물동량의 약90%가 해상으로 운송된다. 악성 행위자(Malign actors)는 이러한 글로벌 공급체계를 이용하여 수익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동 지침은 이란, 북한, 시리아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활동 또는 불법 활동에 이용하고 있는 일부 수법을 소개하고 있다. 해상 물류 또는 해운 활동에 관여된 자는 이러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활동 또는 불법 활동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이란, 북한, 시리아에서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다음의 수법을 항상 경계해야 하며 고위험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강화된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선박자동식별장치 (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의도적 조작 또는 통신 장애 유발

선박자동식별장치는 VHF(very high frequency)통신기를 통해 선박의 선명, 제원 속력 등의 정보를 선박-선박, 선박-육상간 자동 수신할 수 있는 항해 장비로 선박의 정확한 위치와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해상인명안전조약(SOLA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은 일부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 항해 특정 선박의 경우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를 상시 송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안정상의 이유나 송수신 신호가 약해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 송출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불법 선적활동에 관여된 선박이 이동 경로를 숨기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 응답기를 의도적으로 파손하여 중지시키거나 전송된 데이터를 조작하기도 한다. 데이터를 위변조하여 다른 대상 시스템을 공격하는 해킹수법인 '스푸핑(spoofting)'이라 불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 데이터 조작 행위를 통해 허위 선박명, IMO번호(선박고유의 일련번호 7자리), 해상이동통신 식별번호(MMSI) 또는 기타 식별정보를 송출하기도 한다. 또한, 이 수법을 통해 차항지 또는 항해관련 정보를 은폐한다.

2) 선박 식별정보 물리적 변경

100GT 이상 여객선 및 300GT 이상 화물선은 선박의 선체 또는 선박 상부구조의 눈에 띄는 곳에 선박명 및 IMO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선박의 IMO번호는 변경 가능한 선주 또는

선박명과는 달리 한 번 주어지면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선박의 고유번호이다. 불법 활동에 관여한 선박은 정체를 숨기고 다른 선박으로 가장하기 위해 종종 선박명과 IMO번호에 페인트를 덧칠한다.

3) 화물 및 선박 문서 위조

해상운송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해당 운송에 연관된 단체, 수령인, 화물, 선박에 대한 정보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적 관련 서류 일체를 정확하게 마련해야 한다. 해상운송을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선하증권, 원산지 증명서, 송장, 포장 명세서, 보험 증권 및 최종 기항지 목록 등이다. 최근, 석유화학제품, 석유, 석유제품, 금속(강철) 또는 모래에 대한 선적관련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출항지를 은폐하기 위해 선적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경우가 적발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정 서류(통관 및 수출 관리 문서 등)를 위조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선적의 내용물이 확인되기 전까지 화물이 억류(hold)될 수 있다. 또한, 해운업 관련 업계는 화물의 출항지가 저위험지역으로 알려져 있더라도 화물이 제재 회피 고위험지역에서 출항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선적 관련 서류에 대해 주의의무를 이행하길 권고한다.

4) 선박간 환적

선박간 환적(해상에서 선박간 화물 이동)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기도 하지만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석유, 석탄 등을 비밀리에 수송한 후 출항지 또는 도착지를 은폐하여 제재 회피 또는 불법 활동 고위험지역에서 야간에 선박간 환적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5) 항해기록 조작

악성 행위자는 제3국을 통한 경유/우회, 화물 수송/환적을 통해 화물의 출항지/도착지 또는 화물 수령자를 은폐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글로벌 해상물류에 있어 수송 및 환적은 일반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기국 선박 대리점, 항만 하역사, 해운 협회, 선주, 운항사, 용선사, 선장, 선원 회사 등은 일반적인 관행에서 벗어난 경로 및 목적지가 있는지 상세히 살펴야 한다.

6) 허위 기국 사용 및 빈번한 기국 변경

악성 행위자는 불법 선적활동을 숨기기 위해 선박의 기국을 위변조할 수 있다. 또한, 적발을 피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기국을 변경하기도 한다. 민간기업은 선박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말소된 기국을 계속 사용하는 선주 또는 대리점, 적절한 승인 없이 특정 기국을 사용하는 선박, 또는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기국을 변경하는 선박을 목격할 경우 이를 해당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동 지침의 부속서 A는 업계 별 구체적인 지침을 기술하고 있다.

7) 복잡한 소유권 또는 관리 구조

해운산업은 상호 의존적이며 정부 및 여러 민간기업이 연관된 복잡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악성 행위자는 해운업의 복잡한 특성을 악용해 비즈니스 구조를 복잡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유령회사를 관여시키거나 소유권 및 관리체계를 여러 단계로 두어 최종 화물 수익자를 은폐하여 제재 또는 여타 법의 집행을 피한다. 또한, 악성 행위자는 소유권/관리체계 또는 국제안전관리(ISM) 규약 대리점을 반복적으로 변경한다. 실제 수익자를 확인할 수 없는 거래에 대해서는 주의의무를 실시하여 제재 가능성이 있는 활동 또는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재 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식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천사항

민간기업은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마련된 준수프로그램 및 적절한 주의의무를 이행하고 동시에 불법 또는 제재 가능성이 있는 '위험'신호 및 변칙 사례를 대응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음에 명기된 구체적인 조치는 제재 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은 미국 법령 또는 기타 관련 법령이 아니며 미국법 또는 기타 관련법령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된다.

1) 제재 준수 프로그램 제도화

민간기업은 자체 제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제재 준수 프로그램 및 주의의무를 실시하고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제공하여 제재 준수 프로그램 및 주의의무가 잘 이행되도록 한다. 민간기업은 거래대상자 및 파트너사, 자회사, 계열사에게 현지 규정에 의거 준수해야 하는 제재 관련 준수사항을 분명히 설명한다.

민간기업은 표준화되고 문서화된 운영상의 준수 정책, 절차, 행동강령 기준,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이행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준수 프로그램에 제재 가능성이 있는 활동에 연루된 자를 즉시 퇴사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러한 활동에 대한 잠재 위험성을 저감할 수 있는 적절한 통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더불어, 불법 행위 또는 제재 대상이 의심되는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사후보복 당하지 않도록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신분보장이 되는 신고시스템을 구축한다.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외부전문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는다.

또한, 거래 대상자인 선주, 선박 대리점, 용선사, 운항사 등이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적절한 준수정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제재 준수프로그램에 포함할 수 있다. 각 거래대상자가 제재 준수프로그램을 구축함으로써 다음 사항을 기대할 수 있다.

- 미국 및 유엔 제재 조치를 준수하여 업무수행
- 자체적으로 제재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 보장(직영, 계약직, 직원)
- 자회사 및 계열사 관련 정책 준수 보장
- 선박자동식별장치 조작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제장치 마련
- 고위험지역 내 화물 선/하역 검사 및 평가 통제장치 마련
- 선하증권 진위여부 평가 통제장치 마련
- 동 지침을 준수하는 통제장치 마련

2) 선박자동식별장치 모범사례 수립 및 계약적 요구사항 마련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의도적 조작 및 통신 장애가 발견되는 경우 불법 또는 제재 가능성이

있는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해운업계는 각 기업의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과거에 선박자동식별장치 조작 여부 및 화물 운송 중 선박자동식별장치 조작 및 통신 장애 발생 여부를 조사한다. 선주, 용선사, 대리점과 거래를 하는 보험회사 및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민간기업, 해운업 종사자, 기국은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의거 특히 제재 회피 고위험지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를 상시 송출하도록 요구한다.

부속서 A에 명기된 업계를 포함한 민간기업은 문제가 되는 선박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전 또는 현존하는 계약을 유지하는 동안 선박자동식별장치 응답기 조작에 대한 징후 및 신고내용이 있는지 조사한다. 금융기관은 선박자동식별장치 조작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해운업 고객(특히, 제재 회피 고위험지역에서 운항하는 선박 소유자 및 운항사, 서비스 제공자)대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거래 선박이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조작하거나 통신장애를 유발해 불법 또는 제재 가능성이 있는 활동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러한 상황 발생 시 선박 또는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또한,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의거 (1)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를 상시 송출하지 않은 선박 또는 (2) 선박자동식별장치가 조작되거나 중단된 적인 있는 선박으로 선박간 환적을 금지하는 문구를 계약서에 추가할 수 있다.

항만국 통제 및 선박교통관제서비스 당국은 각 관할권에 입출항하는 탱커 및 벌크 탱커에게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를 상시 송출하도록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항만당국은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의거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를 상시 송출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불법 또는 제재 가능성이 있는 활동 연루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불법 활동으로 판정된 경우 항만당국은 해당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거래 전반 선박 모니터링

각 기업의 위험성 평가에 의거 선주, 선박 대리점, 용선사는 용선된 선박을 포함해서 관련 선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장거리선박위치추적장치(LRIT, Long 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를 선박자동식별장치에 설치하고 장거리선박위치추적장치 신호를 주기적으로 수신한다. 제재 회피 고위험지역의 항만당국은 위험 저감 전략으로 장거리선박위치추적장치를 사용하여 각 항만국의 영해를 항해하는 선박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선주 및 선박 대리점은 고위험지역에서 선박간 환적을 실시하는 선박 운항사의 기만적 선적활동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다. 선박간 환적에 앞서 선박 운항사는 상대 선박명, IMO번호, 기국을 확인하고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신호 송출 여부를 점검한다. 선박의 소유권이 동일한 수익자가 관리하는 회사간 변경되었는지 또는 소유권 변경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위험'신호를 식별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4) 고객 및 거래대상자 확인 의무

기국 및 보험회사, 금융기관, 선박대리점, 용선사는 위험성 평가 기반 주의의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주의의무는 각 사의 최종 수익 소유자의 성명,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신분증 복사본을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특정 기국에 선박을 등록하거나 선박보험 및 선박금융을 신청하고자 할 때 해당 선박의 최종 수익 소유자에 대한 문서가 필요함으로 상기 문서를 보관하여 필요 시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5) 공급망 주의의무 이행

수출업자 등 해운물류 관련 종사자는 거래 대상자 및 화물 수령자가 이란산 석유 또는 북한산 석탄 등 제재 대상 원자재를 수송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의무를 실시한다. 수출업자 등 해운물류 종사자는 특히 고위험지역에서 선박간 환적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화물의 출항지 및 수취자를 확인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마련한다. 필요 시, 수출면허 사본과 화물의 출항지와 도착지가 적힌 선하증권 등 선적 관련 서류 일체를 요청한다.

해운업계 민간기업은 선박 및 화물, 출항지, 도착지, 거래 관련자 등 항해 관련 세부사항을 확인한다. 특히, 불법 또는 제재 회피 목적으로 선박이 우회하지 않고 선적 관련 서류에 명기된 항만으로 화물을 수송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적 관련 서류를 철저히 검토한다.

6) 계약서 문구 추가

해운업 관련 국제 교역, 금융, 여타 거래에 있어 모범이 되는 관행을 계약서에 추가하길 장려한다.

7) 업계 정보 공유

제재준수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업계 전반에 걸친 제재관련 어려움 및 위협, 위험성 저감 조치에 대한 업계 전반의 인식을 제고한다. 미 국무부, 미 재무부의 외국자산통제국(OFAC), 미국 해안경비대는 해운협회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부합하는 제재 관련 정보를 회원국에 제공하고 폭넓게는 파트너사, 타 협회 회원국과 공유하도록 권고한다. 예를 들어, P&I 보험회사가 제재 회피를 위한 불법 활동, 제재 가능성이 있는 해운 활동, 또는 새로운 수법을 발견한 경우, 제3자와 공유할 수 없는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고 타 P&I 클럽에 동 내용을 공유한다. 유사하게, 선주 및 보험회사는 금융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필요 시 관련 당국을 통해서 이를 이행한다. 기국은 국제해사기구 및 기국정보공유협회(RISC, Registry Information Sharing Compact)와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한다.

추가 자료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기존 OFAC 지침 및 유엔 지침 참고하세요.³ OFAC 사이트 https://public.govdelivery.com/accounts/USTREAS/subscriber/new?topic_id=USTREAS_61에 등록하면 OFAC 제재 관련 업데이트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 미국 국무부의 대위협 금융 제재과(Counter Threat Finance and Sanctions Division) 홈페이지 <https://www.state.gov/subscribe-to-sanctions-alerts>에 등록하거나 sanctions@state.gov로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다.⁴

OFAC 제재 규정 및 요구사항 관련 질문이 있거나 미국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1-800-540-6322 또는 OFAC_Feedback@treasury.gov으로 신고한다. 특정 OFAC 라이선스에 대한 질문은 <https://licensing.ofac.treas.gov/Apply/Introduction.aspx>에서 가능하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국무부는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RFJ, Rewards for Justice)를 운영하여 불법 선적 및 돈세탁, 사이버범죄,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북한을 지원하는 특정 활동에 연루된 자의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한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https://rewardsforjustice.net/english/about-rfj/north_korea.htm 를 참고하세요.

미국 국무부는 이란제재에 대한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및 쿠비스 부대(IRGC-QF)의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최대 1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한다. 2019년 미국정부는 IRGC를 외국테러조직(FTO)로 지정했고 현재는 특별국제테러리스트(SDGT)로 지정하였다. IRGC-QF는 Hizballah 및 Hamas등 이란 밖에서 활동하는 무장단체를 지원하는 테러리스트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https://rewardsforjustice.net/english/irgc.html> 를 참고하세요.

IMO 번호 확인은 IMO 데이터베이스 <https://gisis.imo.org/Public/SHIPS/Default.aspx> 에서 가능하다. 선박 등록이 말소된 경우 IMO에 직접 연락하세요 (또는 국제해사기구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위해 국제해사기구가 지정한 기관에 연락하세요).

³ 해운 부문을 위한 UNSC 제재 준수, 2015년 1월 <<https://undocs.org/S/2015/28>>.

⁴ 해당 부서의 홈페이지는 주소는 <https://www.state.gov/economic-sanctions-policy-and-implementation/> 이다.



미국 재무부



미국 국무부



미국 해안경비대

**부속서 A: 해운업계 제재조치 이행 관련
추가 지침**

미 국무부, 미 재무부 산하 외국자산통제국(OFAC), 미국 해안경비대는 미국 관할권내 거주하는 개인과 미국 또는 미국인과 거래하는 비미국인(이하, 외국인)이 위험성기반 제재 준수 접근방식을 채택하길 장려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특정인과의 특정 거래에 대해 제재 준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이행하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업의 규모/구조, 취급 상품/서비스, 고객/거래 대상자, 지리적 위치 등에 따라 각 기업마다 준수프로그램이 상이할 수 있으나 다음 5가지 필수요소는 반드시 포함하여 준수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 경영진 참여
- 위험성 평가 실시
- 내부 통제장치 마련
- 프로그램 시험 및 감사 실시
- 교육

자세한 내용은 OFAC 준수 체계(A Framework for OFAC Compliance Commitments)를 참조한다.

동 부속서의 목적은 해운업계가 상기 5가지 필수 요소를 포함하여 효과적인 제재준수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함에 있다. 동 부속서는 다음에 나열된 업계를 위한 지침 및 정보를 제공한다.

- 해상보험회사
- 기국 선박 대리점
- 항만통제당국
- 해운 협회
- 역내 및 국제무역업자, 공급업자, 중개업자
- 금융 기관
- 선주, 운항사, 용선사

- 선급
- 선장
- 선원 회사

각 기업은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될 시 동 부속서의 지침을 채택한다.⁵

해상보험회사를 위한 지침

해상보험회사는 제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확인된 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해 다음 주의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한다.

- 보험에 가입된 선박의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를 모니터링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 해상인명안전조약 상반되어 상당 시간 동안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 미 송출
 - 의심스러운 우회(위험 항만, 악천후 또는 비상상황 등과 같이 합당한 이유 없이 우회한 경우)
 -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상반되어 반복적인 선박자동식별장치 전원 차단
 -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의거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를 송출하지 않는 선박과 교역
- 보험회사는 선박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 그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해당 선박이 제재 회피 고위험지역을 항해하고 불법일 수 있는 활동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선박의 선박자동식별장치 이력을 평가하는 주의의무 절차를 수립한다. 선박이 제재 회피 고위험지역을 항해하거나 선박의 불법 활동이 의심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연루된 가능성이 보이므로 관련 항해정보, 용선사, 선주 등을 추가 조사한다.
- 선주, 공급업자, 구매자, 용선사, 선박 대리점의 보험가입을 승인하기 전에 보험회사는 관련 당사자의 소유권 또는 관리 체계하에 있는 모든 선박의 선박자동식별장치 이력을 조회한다. 보험회사는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상반되어 선박자동식별장치 응답기를 조작한 흔적을 '위험'신호로 간주하며, (1) 보험을 체결 이전, (2) 보험 서비스 제공 전, 또는 (3) 선박자동식별장치 응답기를 조작한 선박과의 거래를 시작하기 전, 해당 선박의 선박자동식별장치 응답기가 조작된 흔적이 있는지 조사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알린다.
-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상반되어 선박자동식별장치 통신장애 또는 조작이 발생된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선박의 활동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험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백하게 추가한다.

⁵ 동 지침은 미국법 또는 기타 관련 법령이 아니며 미국법 또는 기타 관련법령으로 해석하거나 이해해서는 안 된다.

-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의거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를 송출하지 않은 선박 또는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상반되어 선박자동식별장치 응답기를 조작한 이력이 있는 선박과의 환적을 금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한다.
- 불법활동에 관여된 선박의 보험을 해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법률 규제기관/관련 당국, 타 보험회사, 상업적 데이터베이스, 국제해사기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회에 해당사항을 알린다.
- 선주 등 피보험자에게 미국 또는 유엔 안보리제재 위반 시 해당 보험 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재량으로 해당 선박의 소유권 정보가 공개되는 주의의무 관련 자료 및 등록서류를 미국정부 및/또는 유엔에 제공될 수 있음을 알린다.
-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적절하고 허용하는 바에 따라 제재 회피 또는 위반 고위험지역에서 항해하는 선박 소유권자 **모두의** 여권 칼라 복사본, 성명, 회사/자택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그리고 선박 소유권자 선대의 모든 선박의 IMO번호와 선박명을 주의의무 문서(기국 등록서류)에 등록한다.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는 불법활동에 연루한 선박의 개인식별정보를 관련당국에 공유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선박의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한다.
- 해운 산업은 다양한 관할권에 있는 여러 당사자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글로벌 피트너사와 명확한 의사소통을 보장한다. 미국 및 유엔 안보리 제재의 제약사항 및 해당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해운업에 종사하는 모든 당사자가 동 지침을 각자의 공급망에 배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 미국 재무부, 유엔, 해양경비대에서 발행한 지침 및 관련 정보와 함께 선박 위치 이력, 선박 등록 정보, 선박 기국 정보 등의 정보를 주의의무 활동에 포함한다.

기국 선박대리점(Managers)을 위한 지침

기국 선박대리점은 제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확인된 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해 다음 주의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한다.

- 선박등록을 위한 신청서가 접수될 때 국제해사기구의 세계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 Global Integrated Shipping Information System)의 선박 및 선사 특정 모듈을 통해 각 선박의 IMO번호를 검증한다. IMO번호와 선박명이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선박이 등록되기 전, 해당 선박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이전 기국에 연락하여 과거 등록 신청내역 및 등록 해제 이유를 확인한다.
- 해상인명안전조약 규정 X 1-1/5에 의거, 선박대리점은 이전 기국에서 발행한 선박이력기록부(CSR, Continuous Synopsis Record)와 함께 가입할 기국 관할권에 등록할 기간을 명기한 선박이력기록부 사본을 가입할 기국 등록소에 송부한다.
- 선박 등록에 앞서 현재 기국과 함께 선박이력기록부의 내용을 점검하고 확인한다.
- 원유, 정제된 석유, 석유화학제품, 강재, 알루미늄, 구리, 기타 금속류, 모래, 석탄 등을 수송한 선박이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상반되어 빈번한 선박자동식별장치 통신 장애 또는 조작이 발생하는 경우 불법활동에 연루된 가능성을 보이므로 해당 선박의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 송출 이력을 조사한다.
- 제재 가능한 활동 또는 불법 선적활동에 연루되어 등록이 해제되었거나 등록을 거부당한 선박의 경우 타 기국 등록소,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국제해사기구에 해당 선박의 IMO번호와 선박명을 알린다. 이를 통해, 모든 기국 등록소가 미국 및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사례를 인지하고 일관성 있게 행동할 수 있다. 복한이 연루되어 선박 등록이 해제되었거나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 유엔 북한 전문가 패널에 알린다.
- 특히 유엔에서 금지하는 활동으로 인해 선박 등록이 해제된 경우 선박 등록말소증명서에 해제이유를 명기한다.
-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조작 또는 통신장애 여부를 추적할 수 있도록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RIT, Long 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을 사용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를 계속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한다.
-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상반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조작하고 통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은 조사대상이며 조사 후 등록이 해제될 수 있음을 선박 관련 모든 고객에게 알린다.
- 기국에 등록된 선박이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상반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조작하거나 통신

장애를 반복적으로 유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한 등록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등록을 거부한다.

- 기국정보공유협회(RISC, Registry Information Sharing Compact, 라이베리아, 파나마, 마셜제도 주도 협회)에 양해각서(MOU) 형식으로 가입할 것을 요청한다.
- 제재 또는 불법 활동에 연루한 가능성이 있는 선박의 선주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미국 및 유엔 안보리 제재 영향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세미나를 개최한다.
- 선박의 이전 기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핸드폰을 사용해서 등록서류의 진위, 유효성 또는 해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 또는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한다.
- 주기적으로 선사 등록상태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해당 선사의 폐업(해산, dissolution)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 선급과 협력하여 비상상황 시 통신 중지를 허용하는 해상인명안전조약의 요구사항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에 소프트 락(soft lock)을 설치하여 선박 식별 및 위치 정보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소프트 락을 설치할 경우, 비상상황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통신중지를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해하는 동안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수동으로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선급이 필수 연차검사를 실시할 때 변경 로그 및 데이터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불법 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기국에 신고하는 등 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활용한다.
- 선주는 최초 항해 전, 선박간 환적에 연루될 수 있는 선장을 대상으로 선박간 환적 활동에 대한 관련 제재프로그램을 교육한다.
-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의 전원이 꺼지거나 작동불능이 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그 이유를 조사한다.
- 선박 등록 신청자 및 선주에게 제재 활동 또는 불법 활동에 연루 시 즉시 기국에서 선박 등록을 해제할 수 있고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거 기국의 재량으로 선주 정보가 공개된 관련 주의의무관련 문서 및 등록서류를 미국 정부 및 관련 유엔기구에 송부할 수 있음을 알린다.
- 불법 행위 또는 제재 대상이 의심되는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사후보복 당하지 않도록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신변보장이 되는 신고 시스템을 마련한다.
- 미국 재무부, 유엔, 해양경비대에서 발행한 지침 및 관련 정보와 함께 선박 위치 이력, 선박

등록 정보, 선박 기국 정보 등의 정보를 주의의무 활동에 포함한다.

- 기국에 등록된 날로부터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위반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조작하고 통신장애를 유발하거나 불법 활동에 연루된 선박은 기국 입항이 금지되고 선박 등록이 해제되며 관련 서비스를 거부당할 수 있음을 알린다. 또한,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의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송출하지 않은 선박 또는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위반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조작하고 통신장애를 유발한 이력이 있는 선박과의 환적도 선박등록 해제 대상이 된다.

항만통제당국을 위한 지침

항만통제당국 및 관련 관세당국은 현지 법령과 기준에 의거 제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확인된 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해 다음 주의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한다.

-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의거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게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를 상시 송출하도록 요구한다.
- 선장, 대리점 등 관련 당사자에게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위반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조작하거나 통신장애를 유발하면 불법활동으로 의심될 수 있으며 관련당국의 조사 대상이 됨을 알린다.
-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위반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조작하거나 통신장애를 유발한 이력을 가진 선박의 입항을 거부한다.
- 화물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선하증권을 점검한다. 선하증권 확인 시 제재 회피 고위험지역에서 원유, 석유화학제품, 연료, 금속을 실었을 가능성이 보인다면 특별 주의의무를 이행한다.
- 선하증권을 포함하여 선적 관련 서류 일체를 요청하고 철저히 검토한다. 선하증권을 통해 이란, 북한, 시리아를 출항지 또는 도착지로 화물을 거래하는 개인 및 단체의 화물 출항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적 관련 서류는 선박, 화물, 출항지, 도착지, 거래 대상자 등 항해에 관련된 세부사항이 적혀 있다. 이란, 북한, 시리아와의 거래여부를 떠나 선적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는 불법 활동으로 의심될 수 있는 '위험'신호이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기 전 전면 조사 대상이 된다.
- 불법 행위 또는 제재 대상이 의심되는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사후보복 당하지 않도록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신변보장이 되는 신고 시스템을 마련한다
- 미국 재무부, 유엔, 해양경비대에서 발행한 지침 및 관련 정보와 함께 선박 위치 이력, 선박 등록 정보, 선박 기국 정보 등의 정보를 주의의무 활동에 포함한다.
- 불법 선적 및 돈세탁, 사이버범죄,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북한을 지원하는 특정 활동에 연루된 자의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RFJ)'를 홍보한다. 자세한 정보는 제도 관련 홈페이지(www.rewardsforjustice.net)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northkorea@dosinfo.com)로 문의한다.
-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및 쿠비스 부대(IRGC-QF)의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최대 1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RFJ)'를

홍보한다. 자세한 정보는 제도 관련
홈페이지(<https://rewardsforjustice.net/english/irgc.html>)를 참고한다.

해운 협회를 위한 지침

해운 협회는 제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확인된 위험성을 저감하기에 다음 주의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한다.

- 협회 회원사에게 동 지침을 배포하거나 제재에 대한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국제 기만적 선적행위에 대한 회원사의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 선적활동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성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한다.
- 업계 전반에 걸쳐 발생되고 있는 선적 불법활동, 특히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송에 관한, 주기적인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업데이트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역내/국제 무역, 공급업자, 중개업자를 위한 지침

역내/국제 무역, 공급업자, 중개업자는 제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확인된 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해 다음 주의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한다.

- 용선된 선박에 대해, 특히 제재 회피 고위험지역에서 선박간 환적을 실시하는 선박의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 송출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 선박의 최근 2년 동안의 이력을 조회하여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상반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조작하거나 통신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이력이 있는 선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객과의 거래를 중단한다.
- 용선사와의 계약서에 '선박자동식별장치 전원 차단 금지' 조항을 추가하여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상반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조작 또는 통신장애가 반복적으로 보일 경우, 용선사가 해당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의거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를 송출하지 않은 선박과의 환적을 금지하는 문구를 계약서에 추가한다.
- 계약서 및 부속서에 의거 상품이 거래(운송)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는 계약 조항을 채택한다.
- 선박간 환적 거래 당사자는 화물의 관리 연속성(chain of custody, 기록의 진본성을 판정하는 기준)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 선박의 IMO번호, 화물의 원산지 증명서와 선박 로고를 확인한다.
- 이란, 북한 또는 시리아 항만에서의 선적활동은 제재 가능성이 있는 운송 활동임을 고객에게 인식시킨다.
- 업계 전반에 걸쳐 발생되고 있는 선적 불법활동, 특히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송에 관한, 주기적인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업데이트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사례 연구 시, 유엔안보리 제재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 상시 송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북한관련 선박에 대한 우려사항을 명시한 유엔안보리결의 2397 OP13와 선박간 환적에 대한 유엔안보리결의 2375 OP11를 포함한다.
- 원유 및 정제된 석유, 석유화학제품, 금속을 시장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은 불법활동으로 의심될 수 있는 '위험'신호임을 인식한다.
- 선하증권을 포함하여 선적 관련 서류 일체를 요청하고 철저히 검토한다. 선하증권을 통해 이란, 북한, 시리아를 출항지 또는 도착지로 화물을 거래하는 개인 및 단체의 화물

출항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적 관련 서류는 선박, 화물, 출항지, 도착지, 거래 대상자 등 항해에 관련된 세부사항이 적혀 있다. 이란, 북한, 시리아와의 거래여부를 떠나 선적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행위는 불법 활동으로 의심될 수 있는 '위험'신호이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전면적인 조사를 받게 된다.

- 불법 행위 또는 제재 대상이 의심되는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사후보복 당하지 않도록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신변보장이 되는 신고 시스템을 마련한다
- 해운 산업은 다양한 관할권에 있는 여러 당사자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글로벌 피트너사와 명확한 의사소통을 보장한다. 미국 및 유엔 안보리 제재의 제약사항 및 해당 조치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해운업에 종사하는 모든 당사자가 동지침을 각자의 공급망에 배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 미국 재무부, 유엔, 해양경비대에서 발행한 지침 및 관련 정보와 함께 선박 위치 이력, 선박 등록 정보, 선박 기국 정보 등의 정보를 주의의무 활동에 포함한다.
- 서비스 제공자는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위반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조작하거나 통신 장애를 유발하여 불법 또는 제재 가능성이 있는 활동이 의심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하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수정한다. 또한,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의거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를 송출하지 않은 선박 또는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위반되어 선박자동식별장치 응답기를 조작한 이력이 있는 선박과의 환적을 금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한다.

해운업 고객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금융기관을 위한 지침

(생략)

선주, 운항사, 용선사를 위한 지침

선주, 운항사, 용선사는 제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확인된 위험성을 저감하기에 다음 주의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한다.

- 제3자에게 임대한 선박을 포함하여 모든 선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의거 모든 선박에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설치, 운영하고 조작되지 않도록 한다.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고 매 3시간마다 신호를 전송하도록 설정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다.
- 선박의 선박자동식별장치 수신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특히,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알려진 선박간 환적이 가능한 화물(석탄, 석유, 석유 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을 모니터링한다.
-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조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박을 모니터링하고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상반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 통신장애 유발이 발생한 경우 관련 사항이 조사되고 보고됨을 고객에게 강조한다.
- 최근 2년 동안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상반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조작하거나 통신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한 패턴이 있는 선박을 식별하고 이러한 이력이 있는 선박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객과의 거래를 중단한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 고객과의 계약서에 '선박자동식별장치 전원 차단 금지' 조항을 추가하여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상반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조작 또는 통신장애가 반복적으로 보일 경우, 선주, 용선사, 운항사가 해당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 최종 사용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항만에서 화물을 수령하는 선박 및/또는 수취자, 인도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분석한다. 가능하다면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둔다.
- 업계 전반에 걸쳐 발생되고 있는 선적 불법활동, 특히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송에 관한, 주기적인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업데이트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사례 연구 시, 유엔안보리 제재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 상시 송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북한관련 선박에 대한 우려사항을 명시한 유엔안보리결의 2397 OP13와 선박간 환적에 대한 유엔안보리결의 2375 OP11를 포함한다.
- 선주, 선박 대리점, 용선사, 운항사를 포함한 거래대상자가 다음사항을 포함한 적절하고 적합한 준수 정책을 마련하였는지 확인한다.

1) 미국 및 유엔 제재 조치를 준수하여 업무수행

2) 자체적으로 제재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 보장(직영, 계약직, 직원)

3) 자회사 및 계열사 관련 정책 준수 보장

4) 선박자동식별장치 조작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제장치 마련

5) 고위험지역 내 화물 선/하역 검사 및 평가 통제장치 마련

6) 선하증권 진위여부 평가 통제장치 마련

7) 동 지침을 준수하는 통제장치 마련

- 불법행위 또는 제재 대상이 의심되는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사후보복 당하지 않도록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신변보장이 되는 신고 시스템을 마련한다
- 해운 산업은 다양한 관할권에 있는 여러 당사자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간 미국 및 유엔 안보리 제재의 관련 제약사항을 공유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해운업에 종사하는 모든 당사자가 동 지침을 각자의 공급망에 배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 미국 재무부, 유엔, 해양경비대에서 발행한 지침 및 관련 정보와 함께 선박 위치 이력, 선박 등록 정보, 선박 기국 정보 등의 정보를 주의의무 활동에 포함한다.
-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상반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조작하거나 장애를 유발해 불법 또는 제재 가능성이 있는 활동이 적발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러한 상황 발생 시 선박 또는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수정할 수 있다. 또한,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의거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를 송출하지 않은 선박 또는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상반되어 선박자동식별장치 응답기를 조작한 이력이 있는 선박과의 환적을 금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한다.
- 불법 선적 및 돈세탁, 사이버범죄,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북한을 지원하는 특정 활동에 연루된 자의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RFJ)'를 홍보한다. 자세한 정보는 제도 관련 홈페이지(www.rewardsforjustice.net)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northkorea@dosinfo.com)로 문의한다.
-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및 쿠비스 부대(IRGC-QF)의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최대 1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RFJ)'를 홍보한다. 자세한 정보는 제도 관련 홈페이지(<https://rewardsforjustice.net/english/irgc.html>)를 참고한다.

선급을 위한 지침

선급은 제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확인된 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해 다음 주의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한다.

- 최종 사용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서 항만에서 화물을 수령하는 선박 및/또는 수취자의 기록을 보관하고 관련 사진을 포함한다.
- 적절한 범위로 '고객확인 주의의무(Know Your Customer)' 조치를 채택한다.
- 이란, 북한 또는 시리아 항만에서의 선적 활동은 제재 가능성이 있는 운송 활동임을 고객에게 인식시키다.
- 업계 전반에 걸쳐 발생되고 있는 선적 불법활동, 특히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송에 관한, 주기적인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업데이트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사례 연구 시, 유엔안보리 제재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 상시 송출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북한관련 선박에 대한 우려사항 및 선박간 환적에 대한 유엔안보리결의를 각 사 홈페이지의 이용약관에 포함한다. 특히, 원유, 석유제품 운송에 관련한 정보를 포함한다.
- 선박 등록 신청자 및 선주에게 제재 활동 또는 불법 활동에 연루 시 즉시 기국에서 선박 등록을 해제할 수 있고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거 기국의 재량으로 선주 정보가 공개된 관련 주의의무관련 문서 및 등록서류를 미국 정부 및 관련 유엔기구에 송부할 수 있음을 알린다.
- 선주, 선박 대리점, 용선사, 운항사를 포함한 거래대상자가 다음사항을 포함한 적절하고 적합한 준수 정책을 마련하였는지 확인한다.
 - 1) 미국 및 유엔 제재 조치를 준수하여 업무수행
 - 2) 자체적으로 제재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 보장(직영, 계약직, 직원)
 - 3) 자회사 및 계열사 관련 정책 준수 보장
 - 4) 선박자동식별장치 조작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통제장치 마련
 - 5) 고위험지역 내 화물 선/하역 검사 및 평가 통제장치 마련
 - 6) 선하증권 진위여부 평가 통제장치 마련
 - 7) 동 지침을 준수하는 통제장치 마련
- 선박 소유권자 소유 선대의 모든 선박의 IMO번호와 선박명 그리고 선박 소유권자 **모두의**

여권 칼라 복사본, 성명, 회사/주택 주소, 여권번호, 발급 국가,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주의의무 문서(기국 등록서류)에 등록한다.

- 불법 행위 또는 제재 대상이 의심되는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사후보복 당하지 않도록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신변보장이 되는 신고 시스템을 마련한다.
- 해운 산업은 다양한 관할권에 있는 여러 당사자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간 미국 및 유엔 안보리 제재의 관련 제약사항을 공유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해운업에 종사하는 모든 당사자가 동 지침을 각자의 공급망에 배포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 미국 재무부, 유엔, 해양경비대에서 발행한 지침 및 관련 정보와 함께 선박 위치 이력, 선박 등록 정보, 선박 기국 정보 등의 정보를 주의의무 활동에 포함한다.
- 서비스 제공자는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상반하여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조작하거나 통신 장애를 유발하여 불법 또는 제재 가능성이 있는 활동이 의심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하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수정한다. 또한,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의거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를 송출하지 않은 선박 또는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상반되어 선박자동식별장치 응답기를 조작한 이력이 있는 선박과의 환적을 금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추가한다.

선장을 위한 지침

선원은 제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확인된 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해 다음 주의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한다.

- 해상인명안전조약의 선박자동식별장치 신호 상시 송출 규정을 포함하여 국제해사기구에서 요구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 규정을 항해사가 인지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 국제해사기구가 발행한 불법 선적에 대한 지침을 숙지한다.
- 선장이 운항하는 선박의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모니터링하여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상반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 통신장애가 확인된 경우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주와 용선사에게 알린다.
- 선박이 과거 불법 활동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이력을 조회한다.
- 제재 회피 고위험 지역에서의 선박간 환적을 수행하는 선박의 선장은 선박명 또는 IMO번호를 위장하여 기만적인 활동을 통해 미국 및 유엔 제재가 금지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 또는 제재 대상 선박(blocked vessel)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선장은 선박명, IMO번호, 기국을 확인하여 선박간 환적이 합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불법 선적 및 돈세탁, 사이버범죄,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북한을 지원하는 특정 활동에 연루된 자의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RFJ)'를 홍보한다. 자세한 정보는 제도 관련 홈페이지(www.rewardsforjustice.net)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northkorea@dosinfo.com)로 문의한다.
-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및 쿠비스 부대(IRGC-QF)의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최대 1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RFJ)'를 홍보한다. 자세한 정보는 제도 관련 홈페이지(<https://rewardsforjustice.net/english/irgc.html>)를 참고한다.

선원 회사를 위한 지침

선원 회사는 제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확인된 위험성을 저감하기 위해 다음 주의의무를 적절하게 이행한다.

- 국제해사기구가 발행한 불법 선적에 대한 지침 및 불법 선적활동이 위험한 이유를 선원이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한다.
- 선장이 운항하는 선박의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모니터링하여 해상인명안전조약에 상반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 통신장애가 확인된 경우 조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주와 용선사에게 알린다.
- 선박의 과거 불법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이력을 조회한다.
- 불법 행위 또는 제재 대상이 의심되는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사후보복 당하지 않도록 신고한 자를 보호하고 신변보장이 되는 신고 시스템을 마련한다.
- 불법 선적 및 돈세탁, 사이버범죄,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북한을 지원하는 특정 활동에 연루된 자의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최대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RFJ)'를 홍보한다. 자세한 정보는 제도 관련 홈페이지(www.rewardsforjustice.net)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northkorea@dosinfo.com)로 문의한다.
-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및 쿠비스 부대(IRGC-QF)의 금융거래를 막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최대 1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공하는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RFJ)'를 홍보한다. 자세한 정보는 제도 관련 홈페이지(<https://rewardsforjustice.net/english/irgc.html>)를 참고한다.

부속서 B

이란

부속서 B는 미국 정부의 특별제재 대상자 일부를 포함한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부속서B는 2019년 9월 4일 발행된 이란의 불법 해운활동에 대한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자산통제국(OFAC) 지침을 이은 갱신·확대판이다. 동 부속서B는 최신정보를 기술하고 있으나 OFAC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미국의 대이란 제재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확인하길 권장한다. 추후, OFAC은 기존 지침에 등재되었던 선박목록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추가 갱신판을 발행할 수 있다. OFAC은 특별지정제재대상자 목록(SDN List,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를 통해 SDN List 등재자 및 등재 선박을 조회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검색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제재 적용 대상

OFAC은 이란 거래 및 제재 규정(ITSR, Iranian Transactions and Sanctions Regulations, 31 C.F.R)에 의거 포괄적이란제재 법을 발효 운영하고 있다, ITSР에 의거, OFAC이나 관련 법령이 면제할 경우를 제외하고, (1) 미국인 및 (2) 미국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외국법인(entity)과의, 또는 (3) 미국 내에서의 이란과 이란 정부와 연관된 직간접인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ITSР 섹션560.304에 의거, 이란 정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을 포함하여 이란 정부 또는 미국인 소유 또는 통제하에 있는 미국 내 자산 및 수익자산이 동결된다. 또한 예외대상이 아니거나 OFAC 승인 없이,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 외국인이 미국의 대리계좌(correspondent 계좌)를 통해 이란에 거주한 사람, 이란의 금융기관, 이란 소재 유사기관 등을 대신하여 거래하는 등 미국을 통한 거래를 금지한다.

미국 정부 제재 당국

미국인과 또는 미국 내 거래가 아니라 해도, 비미국인(non-U.S. persons, 이하 외국인, 외국법인 포함)이 이란 국영 석유회사(NIOC, National Iranian Oil Company), 이란 국영 탱커선사(NITC, National Iranian Tanker Company), 이란 국영 선사(IRISL, 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 등 이란 SDN 등재자를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 알면서도(knowingly) 상당한 거래(significant transaction)를 용이하게 한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1) 이란으로 식량, 의약품, 의료장비, 농산물을 수출하거나 (2) 아프카니스탄의 경제 개발 및 재건 지원을 위한 경우 제재 대상에서 면제되거나 예외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활동 지원, 대량살상무기 확산 또는 수송을 위해 이란을 지원하거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Iran's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와 관련된 거래하는 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석유, 석유 제품, 석유화학 제품

2018년 11월 5일 이후, 면제 및 예외대상을 제외하고, 이란산 석유, 석유 제품(항공용 가솔린, 모터 가솔린, 증류유 등),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구매, 취득, 판매, 운송 또는 마케팅과 연관되어 알면서도(knowingly) 상당한 거래(significant transaction)에 연루한 자 또는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는 선박에 관련된 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석유 및 석유 제품, 석유화학제품의 용어정의는 행정명령13846호 섹션16을 참고한다.

금속부문 및 추가 이란 경제 부문

면제 및 예외대상을 제외하고, (1) 이란산 철광석, 철강, 알루미늄, 또는 구리 부문 종사자, (2) 동 분야의 구매, 취득, 판매, 운송 또는 마케팅과 연관되거나 동 분야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상당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란으로부터 또는 이란으로 판매, 공급 또는 운송하기 위해 상당한 거래를 알면서도 수행하는 자는 행정명령13871호에 의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사하게, 귀금속 또는 특정 금속(알루미늄, 강철, 석탄, 흑연, 비가공 금속, 반가공 금속 등)을 이란이 연관되는 특정 용도 또는 특정 사용자에게 알면서도 직간접으로 판매, 공급 또는 운송하는 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면제 및 예외대상을 제외하고, (1) 이란에서 건설업 및 광업, 제조업, 섬유업에 종사하는 자, (2) 동 분야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상당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란으로부터 또는 이란으로 판매, 공급 또는 운송하기 위해 상당한 거래를 알면서도 수행하는 자는 행정명령13902호에 의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란 부문 및 인권 침해 제재 규정 31 C.F.R 562(Iranian Sector and Human Rights Abuses Sanctions Regulations)과 OFAC 지침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이란의 철광석, 강재, 알루미늄, 구리, 건설업, 광업, 제조업, 섬유업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를 권장한다. 행정명령13871호와 행정명령13902호의 유예기간은 각각 2019년 8월 6일과 2020년 4월 9일에 종료되었다. 면제 및 예외대상을 제외하고, 각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선박 서비스 제공

면제 및 예외대상을 제외하고, 이란 SDN 등재자를 위해 이란산 석유 또는 석유제품 등의 화물을 수송한 이란 선박 또는 비이란 선박에게 특정 급유서비스를 알면서도 제공하는 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면제 및 예외대상을 제외하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 대상자, 이란의 에너지, 해운, 조선 분야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자, 이란 국영 선사(IRISL)/ 이란 국영 석유회사(NIOC)/ 이란 국영 탱커선사(NITC)를 포함하여 이란 SDN 등재자를 위해 알면서도 보험 또는 재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자세한 지침은 OFAC 홈페이지의 FAQ를 참고한다.

기만적 해운 활동

이란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석유 해운 업계에서 이란과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만적인 해운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IRGC-QF)와 같은 악성행위자는 석유를 실은 선박의 출항지, 도착지 및 화물 수취자를 은폐하여 미국 제재를 회피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만적 수법이 이란과 이란 석유 산업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동 지침의 본문 '해운업, 에너지 부문, 금속 부문 등 미국 제재조치 이행 관련 권고사항 안내'은 기만적 제재 회피 수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부속서A '해운업계 제재조치 이행 관련 추가 지침'은 해운업계에서 제재 회피를 대응할 수 있는 주의의무 실천사항을 소개한다. 또한, OFAC이 제공하는 'OFAC 준수 프레임워크(A framework for OFAC Compliance Commitments)'는 제재 준수에 대한 일반적인 좋은 관행을 제시한다.